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36호 2014. 5. 8.(목)

공 고

○ 사천시 공고 제2014-405호 2014/2014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36호(2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4 - 405호

2014/2015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

우리시 2014/2015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 및 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우리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5월 8일

사 천 시 장

1. 총 괄

어업별	개발방법	승인요청		승인		불승인	
		건수	면적(ha)	건수	면적(ha)	건수	면적(ha)
패류양식	재개발	2	12.5	2	12.5	-	-
	대체개발	2	10.0	2	10.0	-	-
정치망	재개발	2	0.56	2	0.56	-	-

2. 승인조건

- 가.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시 부여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협의를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.
 - 나.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어업면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.
 - 다.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한 면허처분은 우선순위자 결정 결과에 따라 수면의 한계, 어장간의 거리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.
 - 라. 승인된 수면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업분쟁이 야기될 시에는 그 민원 및 어업분쟁을 해소한 후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.
 - 마. 대체개발시 기존어장의 폐어구·어망 수거 등 어장청소가 완료된 후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.
 - 바.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장경계구역 야간표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※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하여는 상기 조건이 충족될 때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336호(3)

3. 2014/2015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

어업명	어업종류 (양식방법)	양식물	수위면적	면적 (ha)	승인여부	도면번호	비고
정치망	죽방렴	멸치 외 2	사천 실안	0.37	승인	1	정치망 제31호 기간만료로 인한 재개발
			사천 실안	0.19	승인	2	정치망 제32호 기간만료로 인한 재개발
패양 류식	살포식	피조개	서포 다평	7.5	승인	3	사천양식 제3호 기간만료로 인한 재개발
			서포 비토	5.0	승인	4	사천양식 제4호 기간만료로 인한 재개발
			서포 비토	5.0	승인	5	사천양식 제37호 대체개발
			서포 다평	5.0	승인	6	사천양식 제38호 대체개발